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14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 박성민·강선영·구자근

이헌승 · 김위상 · 박덕흠

강승규 · 서일준 · 이상휘

박상웅・강민국・김 건

김승수 · 조경태 · 김희정

최보유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관련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는 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(ODA)은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우위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산업기반 조성 및 경제 성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, 수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가 국내 기업의 산업·에너지 분야 신흥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산업·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(ODA)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

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). 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) ①	제27조(국제산업기술혁력사업) ①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한민	
국의 정부・기업・대학・연구	
기관 및 단체와 국제기구 또는	
외국의 정부・기업・대학・연	
구기관 및 단체와의 기술협력을	
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	
사업(이하 "국제산업기술협력	
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	
있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7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
	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
	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
<u>7.</u> (생 략)	<u>8.</u> (현행 제7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